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5월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계약심의위원회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(안 제2조)

-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
- 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내용 반영

나.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삭제하고,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추가 신설 (안 제4조)

다.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용어 정리 및 중복내용 삭제 (안 제6조)

라.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(안 제11조)

- 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11조의2)
- 바.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(안 제12조)
- 사.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“자문”에 관한 사항 용어정리 및 삭제 (안 제5조 ~ 안 제9조)
- 아.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“20,000원”을 “30,000원”으로 인상(안 별표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[【http://www.sdm.go.kr/】](http://www.sdm.go.kr/) 입법예고란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개정조례」 (안)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○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재무과
(우편번호:03718)

○ 기타 문의사항 : ☎ (02)330-1169, FAX (02)330-1429